2021 ~ 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

의안 번호 1522

제출연월일: 2020. 11. . 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「2021~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(안)」을 구의회에 제출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관별 인력 증감 현황

(단위 : 명)

구	분	2020년	2021년		2022년		2023년		2024년		2025년	
		정원	정원	증감								
합	계	1,326	1,334	8	1,341	7	1,339	△2	1,337	△2	1,334	△3
집행	기관	1,303	1,311	8	1,318	7	1,316	△2	1,314	△2	1,311	△3
의회 기	사무 구	23	23	0	23	0	23	0	23	0	23	0

※2020년은 9월 기준

나. 인력운용 계획 총괄

(단위 : 명)

구 분	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합 계	8	8	7	△2	△2	△3
증 원	24	12	12	0	0	0
감 원	△16	△4	△5	△2	△2	△3

다. 정원증원내역

(단위 : 명)

=		인	력	증	원	
구 분	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합 계	24	12	12	0	0	0
행·재정	3	2	1	0	0	0
세 무	1	0	1	0	0	0
전산·통신	2	2	0	0	0	0
보건복지	17	7	10	0	0	0
정책·총괄	0	3	6	0	0	0
보 건	6	4	2	0	0	0
아동·보육	2	0	2	0	0	0
환경관리	1	1	0	0	0	0
정책·총괄	1	1	0	0	0	0
도시주택	1	0	1	0	0	0
건 축	1	0	1	0	0	0
지역개발	2	2	0	0	0	0
하천(소호)	2	2	0	0	0	0

라. 정원감원내역

(단위 : 명)

	분		인	력	감	원	
		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합	계	△16	△4	△5	△2	△2	△3
환경관리		△16	△4	△5	△2	△2	△3
청소(페기물)		△16	△4	△5	△2	△2	△3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< 관계법규>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- 제23조(인력운용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(이하 "기본인력계획 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,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·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, 시장· 군수·구청장은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 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와 협의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시·군·구 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④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⑤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,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⑥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